

##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서

### 1. 주요 법적근거

○ 외국인 투자촉진법, 제9조(법인세 등의 감면)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~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.

#### ②~③항 생략

④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.

1. 취득세,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세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(이하2항 및 제5항에서 "감면대상세액"이라 한다)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
2.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(이하2항 및 제5항에서 "공제대상금액"이라 한다)의 전액을, 그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

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·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대한 취득세·등록세·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.

⑥~⑨항 생략

## 2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(안)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시·군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시·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(안)이 시달되어 이에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